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5
----------	-----

2025. 6. 11.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5. 30. 강남구청장(중대재해예방실)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위의 사업장을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안 제4조(적용 범위)보다 앞으로 조정하여 책무 강조(안 제3조)

- 나.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 사업장 범위 명확화(안 제4조)
- 다. ‘안전보건지킴이’ 는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③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 안 제3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5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중대재해예방실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위의 사업장을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안 제4조(적용 범위)보다 앞으로 조정하여 책무 강조(안 제3조)

나.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 사업장 범위 명확화(안 제4조)

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자와 역할이 중복되어 삭제(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③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0.~2025.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으로, “예방하고”를 “예방하고,”로, “증진함”을 “증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5조 중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을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보건지킴이”를 “강남구 안전관리자”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업안전보건법</u>」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u>예방하고</u>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u>증진</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안전보건지킴이</u>”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u>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u>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u>강남구</u>”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p>	<p>제1조(목적) ----- 「<u>산업안전보건법</u>」 제4조의3제3항----- ----- ----- <u>예방하고,</u> ----- ----- ----- ----- <u>증진</u>하는 것-----.</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노동안전보건</u>”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②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3. (생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생략)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조례를 -----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 3. (현행과 같음)
4. 강남구 안전관리자-----
5. (현행과 같음)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  
-----  
-----.

1.·2. (생략)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 8. (생략)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

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삭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강남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

-----  
-----  
----- 범위-----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 중대재해예방실 행정8급 조성복(02-3423-5015)